- '데이터 3법'으로 불리는 '개인정보 보호법',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, '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개정
- '데이터 3법' 중 '개인정보보호법'
- :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 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 심이다.
-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
- :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.
-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
- :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'개인정보 보호법'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.

■ '환자안전법 개정안'

: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'고 규정

-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,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, 관련 법률 간 유사·중복 규정을 정비한 추진 체계 일원화,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
- 의료 산업 현장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민감성 의료 정보 활용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3법의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3법의 시행령·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